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하오나, 폐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 광주광역시 복구청장



- 공 고 명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3. 12. 19.(화) ~ 2024. 1. 2.(화) (15일간)
- 처분원인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업장 폐업 및 시설 멸실 확인
- 처분내용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신고취소)
- 대 상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직권말소 대상	공시송달 사유
황토자라	이*대	광주광역시북구 장등동 144-18호 외 2필지	기타수질 오염원	폐업 등 우편송달 불가
대한안경원	조*욱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106-1 (임동)		
보건안경	최*진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55 (매곡동)		
리안경	김*신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29, 양지빌딩 (우산동)		
뉴글라스 운암점	문*석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17 (운암동)		

### 6. 안 내

가. 폐업 및 시설 멸실 확인한 사업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의견제출)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이 부재함에 따라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공고된 처분이 실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의 적용을 받는 업장에서 기타수질오염원을 재차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설 설치가능 여부 검토 후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신규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기관명/부서명/담당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 기후환경과 김두경
- 주소/연락처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062)410-6471  
(전자우편주소: dodocheery@korea.kr, 모사전송(FAX)번호: 062)510-1334)